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

발의연월일 : 2025. 01. 24.

발 의 자 : 이진환, 전혜연, 박경원

박윤옥, 이경숙, 한근수

정현미, 김지훈(민)

1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양주시의정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누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회 운영비용 지원 제한사항 규정 신설(안 제4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영지원) ① 남양주시장은,	제4조(운영지원) ①
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	
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	
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	
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 <u>단서 신설></u>	
	<u>다만,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</u>
	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